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51934 판결 [구상금등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리더스틸 주식회사

4.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 종결 2017. 8. 10.

판결 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3,124,601원 및 그 중 259,695,127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162,669,41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1,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각 2016. 11.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리더스틸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리더스틸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4.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 4항 기재 및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11. 2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보증금액 1,500,000,000원, 보증기한 2009. 11. 20.(그 뒤 2016. 11. 11.로 변경)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이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9. 9. 피고 A과 보증금액 8억 원, 보증기한 2012. 9. 7.(그 뒤 2016. 9. 2.로 변경)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5. 9. 3. 피고 A과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6. 9. 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6. 1. 1.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에 1,500,000,000원을, 2016. 3. 25.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325,439,940원(= 원금 319,968,000원 + 이자 5,471,940원)을, 2016. 4. 4. 이 사건 제3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162,669,410원(= 원금 160,000,000원 + 이자 2,669,41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2016. 3. 25. 49,389,044원, 같은 해 4. 4. 1,059,060원, 같은 해 4. 6. 17,259원, 같은 해 4. 29. 15,279,450원 합계 65,744,813원을 회수하여 위 돈을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259,695,127원(= 325,439,940원 - 65,744,813원)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위변제 후 회수한 금원에 대하여 확정지연손해금 167,484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2016. 2. 16.부터 2016. 8. 9.까지 지출한 대지급금 5,859,420원 중 회수된 5,266,840원을 공제한 대지급금 잔액은 592,580원이며,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5. 12. 9. 피고 리더스틸 주식회사(이하 '피고 리더스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리더스틸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2. 10. 접수 제2633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2) 피고 A은 2015. 12. 29. 피고 현대비앤지스틸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2. 29. 접수 제2783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3) 피고 A은 2016. 1. 11.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미화 54만 불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우리은행에게 같은 등기소 2016. 1. 11. 접수 제50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설정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0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0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임의경매절차 진행경과 및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2017. 2. 28. 배당기일에 피고 리더스틸에 대하여 96,012,488원을, 피고 우리은행에 대하여 1,447,08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하여 배당액이 없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17. 2. 17. 피고 리더스틸, 우리은행의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37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2. 22.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리더스틸, 현대비앤지스틸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A, B, 우리은행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현대비앤지스틸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고,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현대비앤지스틸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을 상대로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을 상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 A,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 1,923,124,601원{= 대위변제금 총 1,922,364,537원(= 이 사건 제1보증약정 대위변제금 1,500,000,000원 + 이 사건 제2보증약정 대위변제금 259,695,127원 + 이 사건 제3보증약정 대위변제금 162,669,410원) +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의 확정지연손해금 167,484원 + 대지급금 592,58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259,695,12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25.부터, 이 사건 제3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162,669,4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4. 4.부터,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4. 29.부터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6. 11. 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 리더스틸, 우리은행)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발생하였으나 그 이전에 채무발생의 기초인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3,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은 피고 리더스틸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A은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미수금채무도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결국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의 채권자인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이 신용보증사고신고를 하였다), ③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1달 이내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리더스틸

피고 A은 위 피고로부터 스텐리스 제품을 공급받거나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의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 을다 제3호증, 을라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책임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A의 채무초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 A은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리더스틸, 우리은행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가) 피고 A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액이 2016. 3. 28.자 기준으로 1,254,208,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 피고 A은 위 각 부동산 외에도 보령시 D굴도 1319호의 공유지분 1/10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 1. 19. E에게 7,000,000원에 위 공유지분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약 1,261,208,000원(= 1,254,208,000원 + 7,000,000원)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 A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구상금채무만 하더라도 1,923,124,601원이고 그 밖에 피고 리더스틸,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미수금채무도 인정되는바, 피고 A은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채무자가 사업의 경쟁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우선하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피고 리더스틸의 주장의 하더라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기존 미수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피고 A과 피고 리더스틸 간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1달 이내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자금유통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 리더스틸, 우리은행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 리더스틸의 선의 항변

1) 주장의 요지 피고 리더스틸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나)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리더스틸이 피고 A과 장기간 거래관계에 있었고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까지 거래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리더스틸은 피고 A과 사이에 2007년부터 물품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년 말경 피고 A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7~8억 원에 달하였고, 2015년에도 2억 원 이상의 미수금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의 지급능력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 리더스틸은 물적담보 없이 추가 물품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 미수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그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든다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2016. 1. 1.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하기 약 20일 전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 리더스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방법

따라서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음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 1)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고).
- 2)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피고 리더스틸, 우리은행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이 이미 실행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동시에 수익자인 피고 리더스틸, 우리은행이 이 사건 제1, 3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위 피고들에게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경우의 원상회복은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를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리더스틸은 별지 제2목록 순번 1번 기재 배당금출급채권을, 피고 우리은행은 같은 목록 순번 2번 기재 배당금출급채권을 피고 A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그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이소민

판사차윤제

별지